##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9

발의연월일: 2024. 6. 24.

발 의 자:주호영·조 국·김승수

장동혁 • 이헌승 • 김종양

구자근 • 이인선 • 정희용

윤상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와 시·도지사가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를 거쳐 지정한 개 를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령에서 지정한 맹견은 5종으로 그 종류가 한정적이고 맹견과 유사한 견종의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맹견의 견종을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맹견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맹견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장소 외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대규모점포 등으로 맹견 출

입금지 장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맹견의 견종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추가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물림 사고의 유형과 견종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맹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 제22조 단서 및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중 "로트와일러 등"을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그 잡종 및"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제1호 및 제4호"를 "제2조"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출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정한다)에 출입할 수 있다.

- 8.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1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제9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맹견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개물림 사고 현황 및 그 견종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	5
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	
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u>로트</u>	가 <u>로</u>
<u>와일러 등</u> 사람의 생명이	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탠퍼
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	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	불 테리어, 마스티프, 라이
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정하는 개	<u>과 그 잡종 및</u>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u>&lt;단서 신설&gt;</u>	<u>다만,</u> 일시적으로

- 1. · 2. (생략)
- 3. 「초·중등교육법」 <u>제2조제</u>
  <u>1호 및 제4호</u>에 따른 <u>초등학</u>
  교 및 특수학교

4. ~ 7. (생략)

<u><신 설></u>

<신 설>

<신 설>

<신 설>

8. (생략)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
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출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정 한다)에 출입할 수 있다.

- 1. 2. (현행과 같음)
- 3. -----<u>제2조</u>-------학교
- 4. ~ 7. (현행과 같음)
- 8.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 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 른 의료기관
-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1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

   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12. (현행 제8호와 같음)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1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과공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4. ~ 10. (생 략) ② ~ ④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맹견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 개물림 사고 현황 및 그
견종에 관한 사항
4.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